

2024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 작성가이드

'23. 10.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목 차

제1절 기본원칙	1
제2절 일반기준	2
1. 목 적	2
2. 규 격	2
3. 내 용	2
4. 표 기	2
5. 작성단위	2
6. 보고서 양식	2
7. 자료출처	3
8. 기타사항	3
제3절 세부기준	4
1. 안전경영책임계획 구성 항목	4
2. 본 계획 작성법	4
<별첨> 안전경영책임계획 작성 양식(예시)	9

제1절 기본원칙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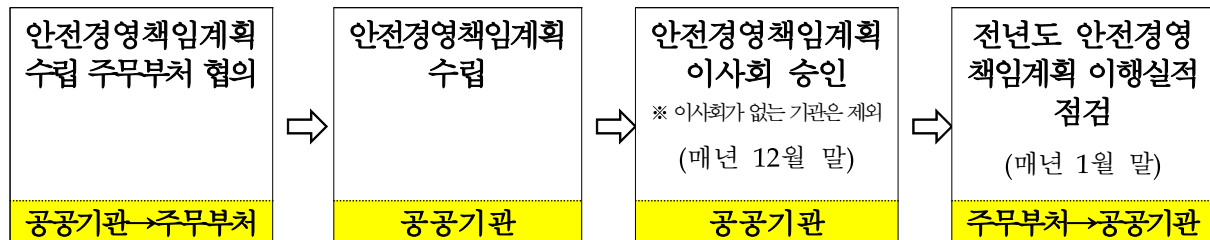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 및 사업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에 따라 안전환경 확보 의무를 지는 연구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핵심기반
-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현장

2. 주요절차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 (매년 12월말)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주무부처 협의 포함) 및 이사회 승인

※ 기한을 반드시 준수, 지연 시 반드시 주무부처 협의

- (매년 1월말) 주무부처의 장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실적 점검

< 작성 유의 사항 >

- 보고서는 내부인력을 활용하여 작성
 - ※ 외주용역을 통한 작성을 금하며, 추후 외주용역을 통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시한 작성양식(표, 서식, 단위 등)은 반드시 준수하되, 양식에서 정한 내용 이 외의 사항은 기관의 자율양식으로 작성 가능

제2절 일반기준

1. 목 적

본 가이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에 의해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 격

안전경영책임계획은 가로 21cm × 세로 29.7cm(A4 용지크기)의 규격으로 좌절하며, 전체를 하나의 파일로 편집한다.

3. 내 용

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별표1 실적 등을 요점 위주로 압축하여 수록하고, 실적 이외에 QR코드, 바코드 등 불필요한 사항의 기재를 금한다.

나. 2023년도의 주요 실적을 전년도까지의 실적과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 표 기

안전경영책임계획은 국문으로 표기하되 제목, 전문용어, 고유명사, 부각시켜야 될 단어, 자료해석상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한자 또는 영문을 병기한다.

5. 작성단위

가. 금액의 단위는 「백만 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단위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소수점의 처리는 소수점 이하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자리까지 기재한다. 부의 수치는 “△”로 표기한다.

6. 보고서 양식

가. 표지는 별도 디자인 없이 단색으로 <표지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기관별 표지 도안에 따른 시간 및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표지양식 통일

나. 본문 용지는 80그램 미색모조지를 사용하며, 간지는 유색용지를 활용하고 불필요한 컬러인쇄는 금지한다.

다. 기관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아래아한글」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작성하며, 날개 설명자료 및 과도한 그래픽 위주의 보고서 작성은 금지한다.

< 안전경영책임계획 표지 공통 사항 >

① 표지제목 : HY헤드라인M체, 장평 100%, 39포인트

② 연 도 : HY헤드라인M체, 20포인트

③ 기 관 명 : HY헤드라인M체, 25포인트

④ 지 질 : 250g 스노우화이트지

⑤ 코 팅 : 유광코팅

▲ 공기업 : 별색 DIC차트 9번 미색

▲ 준정부기관 : 별색 DIC차트 69번 청색

▲ 기타공공기관 : 흰색

7. 자료출처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한다.

8. 기타사항

타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등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 작성이 가능하다.

제3절 세부기준

1. 안전경영책임계획 구성 항목

I. 안전경영 기본현황	II. '23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III. '24년도 안전경영 추진개요	IV. '24년도 안전경영 활동 계획
1. 산업재해 및 안전 사고 등 감축 목표 2.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 3. 안전 예산 현황 4. 안전 전담 조직 및 역할 5. 안전 인력 현황	1. 주요 실적 및 평가 2. 주요 추진내용	1. 안전경영방침 2.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목적 3. 기본 방향 4. 분야별 추진과제	1. 활동계획 2.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본 계획 작성법

가. 작성 기본원칙

- (1) 가급적 동일한 실적자료의 중복기재를 피하고, 불가피하게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여부를 명기한다.
- (2) 안전경영책임계획 작성 가이드 및 작성양식(서식 등)을 준수하되, 양식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내용은 기관의 자율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 (3) 주요 목차는 간지로 구분하며 간지는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4) 작성 내용 중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이 없을 경우 반드시 “해당 없음”으로 표기한다.
- (5) 기관의 ‘24년도 안전경영 추진방향을 대내외 안전경영환경, 관련 정부 정책 등에 기초하여 도출한 전략과제, 성과목표 설정, 추진 전략 및 실행계획 등을 기술한다.
- (6) 안전경영책임계획 작성 양식(예시)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시된 “작성방법”과 “설명내용(파란글씨)”은 본문에서 삭제 후 작성한다.

나. 안전경영 기본현황

(1) 항목별 실적 작성방법

○ 사고 감축 목표·실적

- '20년부터 '24년까지 기관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실적을 다음 양식으로 정리한다.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안전사고 사망자수									

- 최근 4년간 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안전사고의 사망자수를 다음 양식으로 정리한다.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소계				
	직영				
	도급				
	건설발주				
안전사고 사망자수					

- (안전예산 현황) '23년~'24년 안전과 관련된 예산 현황을 다음 양식으로 정리한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		2024
	예산	집행	예산
계			
①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①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대책사업비			
② 노후 설비 및 장비의 교체·보강, 작업장 환경개선비			
③ 청관사 등 업무시설 유지관리비(시설관리용역 등 외주비 포함)			

구분	2023		2024
	예산	집행	예산
②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			
① 안전사업비			
② 안전관리비			
③ 안전진단점검, 안전검사, 각종 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안전경영 및 안전시스템 등 지원예산			
① 안전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②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운영 및 관련 평가 비용			
③ 안전관리 운영체계 관련 문서 등 개발 비용			
④ 안전 관련 물품 및 장비 구입비 등			
① 안전 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② 안전 관련 장비 등			
⑤ 안전 관련 교육·훈련·홍보			
① 안전교육 및 훈련비			
② 안전 관련 행사추진 비용 등 홍보성 비용			
⑥ 안전 R&D			
① 안전 관련 신기술·신제품 개발			
② 안전 관련 연구개발(R&D)			
⑦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SOC 구축 및 관리			
①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 사업			
②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각종 예방장비 사업관리			
⑧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① 본사 및 사업소 등 안전업무 전담부서 인력의 인건비			
② 기타 안전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			
⑨ 기타			
① 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운영			
② 화재보험, 안전 관련 회비 등 기타 경비			

○ 안전 인력 현황

- 기관의 총 인원 및 안전 인력 현황은 다음 양식으로 정리한다.

(단위 : 명)

2023				2024			
기관 총 인원		안전 인력		기관 총 인원		안전 인력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 기관의 안전인력 현황은 다음 양식으로 정리한다.

(단위 : 명)

구분		2023		2024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안전 인력	안전업무 전담부서 인력				
	기타 안전업무 전담 인력				

- 기관의 안전 인력의 전문성 현황은 다음 양식으로 정리한다.

(단위 : 명)

구분	계	안전 전문가				일반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안전관련 전공자	안전관련 경력자	기타 전문가	
2023						
2024						
증감						

(2) 실적내용

- 전년대비 증감, 증가율 등 단순 수치적 비교 이외에 실적치, 변동의 주요원인, 특이사항, 수행 노력, 추진 실적 등을 간략히 기술한다.

(3) 기타사항

- 1) 산출을 위한 계산 과정 중간에는 반올림을 하지 않으며,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3자리까지 산출한다.
- 2) 계량항목 실적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한다.
- 3) 양식은 필요시 기관현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수정내역 및 사유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다. 안전경영 활동계획

추진실적의 세부내용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P-D-C-A 체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 P-D-C-A 체계별 작성 시 참고사항 >

1. 추진계획(Plan)

- 기관의 대내외 안전경영환경, 관련 정부 정책 등에 기초하여 전략과제, 성과목표 설정,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등을 기술한다.
- 수급업체 종사자, 발주 건설공사 현장, 대국민 등을 포함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전경영의 추진계획 등을 기술한다.

2. 추진활동 및 내용(Do)

-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 추진활동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수급업체 종사자, 발주 건설공사 현장, 대국민 등을 포함한 전사적 안전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평가활동 및 내용(Check)

- 계획에 따라 실행되었는지 주기적·정기적으로 평가하거나 측정한 활동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 환류활동 및 내용(Action)

- '23년도 안전경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안전활동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024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

2023. 00.

○○○○기관명

목 차

I. 안전경영 기본현황	00
1.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등 감축 목표·실적	00
2.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	00
3. 안전 예산 현황	00
4. 안전 전담 조직 및 역할	00
5. 안전 인력 현황	00
II. '23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00
1. 주요 실적 및 평가	00
2. 주요 추진내용	00
III. '24년도 안전경영 추진개요	00
1. 안전경영방침	00
2.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목적	00
3. 기본 방향	00
4. 분야별 추진과제	00
IV. '24년도 안전경영 활동계획	00
1. 활동계획	00
2.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00

I. 안전경영 기본현황

1.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등 감축 목표·실적

< 작성방법 >

- ① 참고 1(산업재해, 안전사고 등 관련 용어의 정의)을 참고하여 작성
 - 산업재해의 사고 사망자수는 직영·도급·건설발주를 포함
 - 산업재해는 사고사망 승인일 기준으로 하고 가용한 최신통계로 작성
 - ※ 단, 1/4분기(4월) 공시 때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최종 통계('22년 12월 말 승인 기준)로 수정
- ② '23년도 실적은 보고서 작성일자 기준
- ③ 표 서식 변경 금지

□ 감축 목표 및 실적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안전사고 사망자수									

○ (목표 설정 근거) *(감축 목표 설정 근거를 작성)*

-

□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소계				
	직영				
	도급				
	건설발주				
안전사고 사망자수					

○

-

2.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

< 작성방법 >

- 참고 2(안전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을 참고하여 작성
 - 보안상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는 작성 제외
 - 기관별 자유양식(표 등)으로 자유롭게 구성·편집하여 작성

□ 작업장 : 총 00개소

○

-

□ 건설현장 : 총 00개소

○

-

□ 시설물 : 총 00개소

○

-

□ 연구시설 : 총 00개소

○

-

3. 안전 예산 현황

< 작성방법 >

- ① 참고 3(안전예산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안전예산 편성 현황의 예산항목, 표, 서식, 금액단위(백만 원) 변경 금지
- ② '23년도 집행실적은 작성일자 기준
- ③ 공공기관 안전예산 편성현황 조사(19.10월 업무연락방 문서번호 2019-4061) 작성방법과 동일

가. 안전 예산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		2024
	예산	집행	예산
계			
①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①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대책사업비			
② 노후 설비 및 장비의 교체·보강, 작업장 환경개선비			
③ 청·관사 등 업무시설 유지관리비(시설관리용역 등 외주비 포함)			
②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			
① 안전사업비			
② 안전관리비			
③ 안전진단점검, 안전검사, 각종 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안전경영 및 안전시스템 등 지원예산			
① 안전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②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운영 및 관련 평가 비용			
③ 안전관리 운영체계 관련 문서 등 개발 비용			
④ 안전 관련 물품 및 장비 구입비 등			
① 안전 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② 안전 관련 장비 등			
⑤ 안전 관련 교육·훈련·홍보			
① 안전교육 및 훈련비			
② 안전 관련 행사추진 비용 등 홍보성 비용			
⑥ 안전 R&D			
① 안전 관련 신기술·신제품 개발			
② 안전 관련 연구개발(R&D)			
⑦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SOC 구축 및 관리			
①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 사업			
②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각종 예방장비 사업관리			
⑧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① 본사 및 사업소 등 안전업무 전담부서 인력의 인건비			
② 기타 안전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			
⑨ 기타			
① 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운영			
② 화재보험, 안전 관련 회비 등 기타 경비			

나. 안전예산 세부 편성계획

①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000백만 원)

○

- ~~~~ 등 주요내용

② 안전 사업비 및 안전관리비 등(000백만 원)

○

- ~~~~ 등 주요내용

③ 안전경영 및 안전시스템 등 지원예산 (000백만 원)

○

- ~~~~ 등 주요내용

④ 안전 관련 물품 및 장비 구입비 등(000백만 원)

○

- ~~~~ 등 주요내용

⑤ 안전 관련 교육·훈련·홍보 등 (000백만 원)

○

- ~~~~ 등 주요내용

⑥ 안전 R&D (000백만 원)

○

- ~~~~ 등 주요내용

☐ 7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SOC 구축 및 관리 (000백만 원)

○

- ~~~~ 등 주요내용

☐ 8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000백만 원)

○

- ~~~~ 등 주요내용

☐ 9 기타 (000백만 원)

○

- ~~~~ 등 주요내용

다. 안전예산 증감 사유

☐

○

-

라. '24년도 안전 투자 중점 사업(내역)

☐

○

-

4. 안전 전담 조직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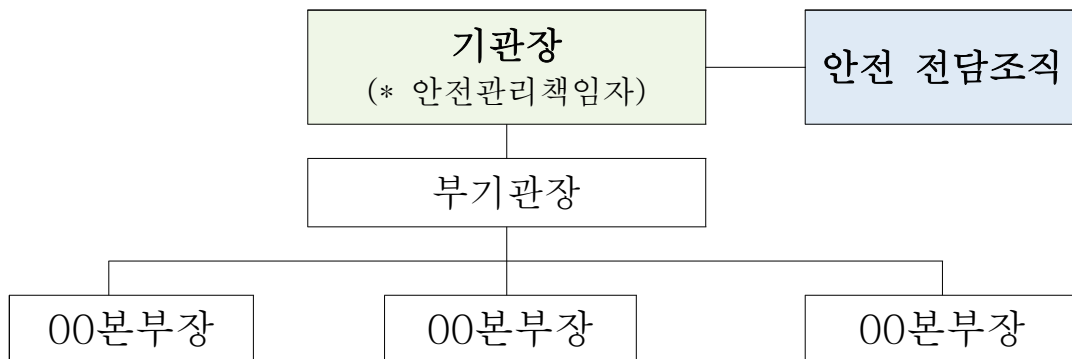
< 작성방법 >

- ① 참고 4(안전 인력 및 전문성)을 참고하여 작성
-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지침 제10조]) ①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임원 인지 또는 임원급 인지 표시), ② 전담조직 의무 설치
- ③ (안전관리 중점기관이 아닌 기관)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한 경우 작성

□ 안전 관련 조직도 및 책임자

[안전 전담조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제규정 등의 공식화된 조직도 작성]

<예시> 안전 관련 조직도



□ 안전 전담 조직 업무분장 [안전 전담조직의 주요 업무내용을 작성]

○

-

5. 안전 인력 현황

< 작성방법 >

- ① 참고 4(안전 인력 및 전문성)을 참고하여 작성
- ② 공공기관 안전인력 현황조사표('19.10월, 업무연락방 문서번호 2019-4060) 작성방법과 동일
- ③ 각 현황의 연도별 정원·현원 등의 합계는 일치하여야 함
- ④ 전문성은 복수항목에 해당되더라도 택1 하여 중복산정 되지 않도록 주의
 - (기타 전문가) 기관 업무 특성상 안전 전문가로 인정하는 인력(기준 별도 명시)
 - (일반 인력) 안전인력에 해당되나 안전 전문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인력
- ⑤ '23년도 안전인력 현황은 작성일자 기준
- ⑥ 표 서식 변경 금지

☐ 기관 인원 및 안전 인력 현황

(단위 : 명)

2023				2024			
기관 총 인원		안전 인력		기관 총 인원		안전 인력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 (안전인력 증감 사유)

-

☐ 안전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3		2024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안전 인력	안전업무 전담부서 인력				
	기타 안전업무 전담 인력				

○ (안전업무 전담부서 인력) [안전 인력의 주요 업무를 작성]

- ~~~~~ 업무 등 수행

○ (기타 안전업무 전담 인력) [기타 안전 인력의 주요 업무를 작성]

- ~~~~~ 업무 등 수행

☐ 안전 인력 전문성 [안전 전문가 확보 내역을 작성]

(단위 : 명)

구분	계	안전 전문가				일반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안전관련 전공자	안전관련 경력자	기타 전문가	
2023						
2024						
증감						

○

-

☐ 안전 인력 충원계획

○ (신규채용)

-

○ (전보충원 또는 자체조정)

-

○ (안전 전문가)

-

Ⅱ. '23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1. 주요 실적 및 평가

< 작성방법 >

- ① 2023년도 안전활동과 관련한 주요한 성과·실적 및 미흡한 점 등을 기술
- ② 기관별 자유양식으로 구성·편집하여 작성

☐ 주요성과·실적

○

-

☐ 미흡한 점

○

-

2. 주요 추진내용

< 작성방법 >

- ① 2023년도 안전활동 추진실적, 추진내용, 개선할 점 등을 기술
- ② 기관별 자유양식으로 구성·편집하여 작성

☐

○

-

Ⅲ. '24년도 안전경영 추진개요

1. 안전경영방침

[기관 안전경영방침 상임]

2.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목적

< 작성방법 >

- 기관에서 2024년도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방침에 따라 근로자 및 대국민 안전·생명 보호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전활동의 주요 목적과 지향점 등을 기술

(10 pt)

☐ (휴먼명조 15pt, 진하게)

(5~7 pt)

- (휴먼명조 14pt)

(5~7 pt)

- (휴먼명조 14pt)

(3~5pt)

- * (맑은고딕 12pt)

(10 pt)

3. 기본 방향

< 작성방법 >

-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성과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2024년도 안전활동의 중점 추진전략을 기술

☐

○

-

*

4. 분야별 추진과제

< 작성방법 >

- ① 개조식 또는 전략체계도(예시 참고)를 작성
 - 전략체계도는 기관에 맞게 편집하거나 다른 양식으로 작성 가능
- ② "IV. '24년도 안전경영 활동계획(p.29~31)"의 내용과 연계하여 작성

☐ 작업장 안전분야

○

-

☐ 건설현장 안전분야

○

-

☐ 시설물 안전분야

○

-

☐ 연구시설 안전분야

○

-

☐ 기타 안전분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협력업체 역량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등을 작성]

○

-

<예시> 수립목적, 기본방향 및 분야별 추진과제

비전	
목표	
추진전략	
분야	추진과제
1 작업장	1 -1 1 -2 1 -3
2 건설현장	2 -1 2 -2 2 -3
3 시설물	3 -1 3 -2
4 연구시설	4 -1 4 -2
5 기 타	5 -1 5 -2

<다른 예시> 수립목적, 기본방향 및 분야별 추진과제

비전				
목표				
				
추진 전략				
분야	① 작업장	② 건설현장	③ 시설물	④ 연구시설
추진 활동 계획 (추진 과제)	①-1 ①-2 ①-3 ①-4 ①-5	②-1 ②-2 ②-3 ②-4 ②-5	③-1 ③-2 ③-3 ③-4 ③-5	④-1 ④-2 ④-3 ④-4 ④-5

Ⅳ. '24년도 안전경영 활동계획

1. 활동계획

< 작성방법 >

- ① 종사자(수급업체, 발주 건설현장 포함), 대국민 보호를 위한 2023년도 모든 안전활동 추진계획을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기술
- ② 각 안전활동별 목적, (성과)목표, 추진방향, 추진내용(절차), 추진일정, 추진담당 부서 등이 가능한 포함될 수 있도록 기술
- ③ 안전활동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적 점검계획이 포함되도록 기술
- ④ (성과)목표는 측정 가능하도록 계량화 하고, 전년도 대비 목표·증감율을 작성
- ⑤ "Ⅲ. '24년도 안전경영 추진개요"의 분야별 추진과제(p.26)와 연계하여 작성
- ⑥ 기관별 자유양식으로 구성·편집하여 작성

가. 작업장 안전분야

나. 건설현장 안전분야

다. 시설물 안전분야

라. 연구시설 안전분야

마. 기타 안전분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협력업체 역량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상기 4개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등을 작성]

2.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작성방법 >

- 경영진 및 안전조직의 안전활동에 대한 (성과)목표, 추진절차, 추진내용 등을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기술

□

○

-

① 작업장 안전분야

1-1 위험성평가 내실화

가. 목 적

공단 수행 사업, 시설물, 기계·기구 및 안전체험교육장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

나. 목 표

☐ 사업물량

○ 정기 위험성평가 : 1회(00개 전 기관)

○ 수시 위험성평가 : 수시

※ 수시 위험성평가는 사유 발생 시 수시 실시

☐ 성과목표

○ 시설물, 설비, 수행 사업, 유지·보수 작업 등 업무에 기인하는 잠재 위험요인 발굴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을 유도

○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 목표 및 안전보건활동 추진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시설물 등의 안전확보와 작업방법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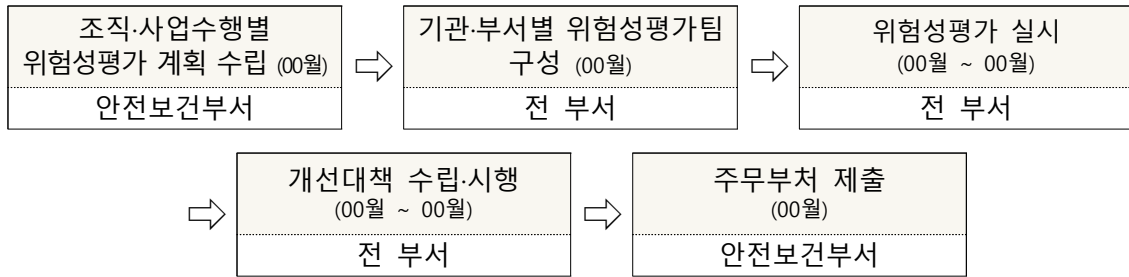
다. 추진방침

☐ 전 기관 정기 위험성평가 내실화

○ 각 기관·부서별 모든 사업에 대하여 기관별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 분야별 사업수행직원, 위험성평가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 실시

○ 청사 내 모든 시설물, 설비, 수행 사업, 유지·보수 작업 등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실시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라. 추진절차



마. 추진내용

- 사업수행별 위험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계획 실시
 - (산하기관) 위험 등급제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작업, 수행 사업에 대해 기관 실정에 맞는 위험성평가 실시로 효율성 제고
 - (OO연구원) 사전 유해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실험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자체 유해·위험성 평가 실시
 - (OO인증원) 안전인증 시험절차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안전절차서 개정 등 환류(Feed back)
- 시설물 관리 업무직의 작업별 절차서 제정 및 안전작업절차를 통한 작업안전(JSA) 위험성평가 실시
- 외주업체를 통한 작업시 과업지시서 등에 위험성평가 수행 요구 및 작업 전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필요시 보완조치 요구

바. 행정사항

- (본부)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사후관리
 - 본부 및 산하기관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 취합
 - 개선대책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조치 이행 결과 주무부처 제출(2주 이내)
- (산하기관) 위험성평가 절차를 준수하여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 기관·부서별 위험성평가팀을 구성하여 개인별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 실시 후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② 건설현장 안전분야

2-1 발주공사 현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가. 추진목적

공단 발주공사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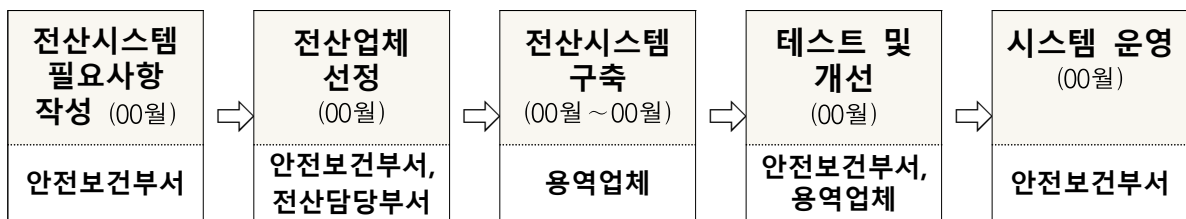
나. 추진방침

- 공단 발주공사에 대한 전수 안전관리로 안전 사각지대 방지
- 공사 주체별 안전관리 역할 준수 및 현장 작동성 강화

다. 추진내용

- 공단 발주공사 현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 공단 발주공사 전체에 대한 현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
 - 공사의 위험성을 검토하여 사전 안전관리계획 검토, 안전감독자 배치여부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

다. 추진일정



라. 행정사항

- (안전보건부서) 전산시스템 방향 설정 및 필요사항 도출
- (전산담당부서) 시스템 현행화 검토 및 용역업체 평가

참고 1

산업재해, 안전사고 등 관련 용어의 정의

□ 산업재해

- (사고 사망자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종사자* 사망자수
 -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연구활동종사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종사자
 - 직영 :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사고 사망자수
 - 도급 : 모든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포함)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수
 - 건설발주 :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사고 사망자수
- (사망승인일) 사고 사망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망승인일(유족급여지급일)을 의미

참 고

- 공식 산재통계는 사망승인일 기준임(사고 발생일 기준 아님)
- '재해·사고현황'은 안전관리지침 제22조에 따른 안전공시에도 동일 적용됨
- 사고 사망자수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공식 산재통계에 의함
-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고 사망자는 사고 사망자수에서 제외(단,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 안전사고 (※ 산업재해 제외)

- (사고사망자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일반 국민 등의 사망자수
 - 연구실 : 연구활동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소속 학생연구원(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대학생·대학원생)의 사고 사망자수
 - 시설이용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일반 국민의 사망자수

참 고

-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연구실 사고사망자(학생 등)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보고 기준임
-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따라 사망으로 판정된 건으로 산정

☐ 안전관리 대상 작업장 범위

- (본사 및 지역본부, 지사, 사무소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
 - * 공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현황에 따라 개소 구분
 - * 본사·지사 등 각각 산재보험 가입 시 개별 개소로 산정
 - * 임차청사 유무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 시 대상에 포함
- (생산시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설비·공정·시설 등을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현장
- (서비스 제공) 검사·진단·시험·검정, 위락·전시·관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 안전관리 대상 건설현장 범위

- (발주 건설공사 현장)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모든 발주 건설공사 현황을 기재

☐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범위

-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 (국가핵심기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기반시설

분야별	지정기준
에너지	전력·석유·가스 공급에 필요한 생산·공급시설과 비축시설
정보통신	교환기 등 주요 통신장비가 집중된 시설 및 정보통신 서비스의 전국상황 감시시설
	국가행정을 운영·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망과 주요 전산시스템
교통수송	인력 수송과 물류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와 실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교통·운송시설 및 이를 통제하는 시설
금융	은행 및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체계
보건의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혈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
원자력	원자력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주제어장치가 집중된 시설과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기 위한 시설
환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집부터 소각·매립까지의 계통상의 시설
정부중요시설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주요 시설
식용수	식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부터 정수까지 계통상의 시설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재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동구

□ 안전관리 대상 연구시설 범위

- (연구시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환경을 확보할 의무를 지는 연구실

참고 3

안전 예산 분류 기준

□ 안전예산 분류기준

대분류 (9개 항목)	중분류 (21개 항목)
①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①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대책사업비 ② 노후 설비 및 장비의 교체·보강, 작업장 환경개선비 ③ 청·관사 등 업무시설 유지관리비 (시설관리용역 등 외주비 포함)
②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 등	① 안전사업비 ② 안전관리비 ③ 안전진단·점검, 안전검사, 각종 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안전경영 및 안전시스템 등 지원예산	① 안전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②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운영 및 관련 평가 비용 ③ 안전관리 운영체계 관련 문서 등 개발 비용
④ 안전 관련 물품 및 장비 구입비 등	① 안전 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② 안전 관련 장비 등
⑤ 안전 관련 교육·훈련·홍보 등	① 안전교육 및 훈련비 ② 안전 관련 행사추진 비용 등 홍보성 비용
⑥ 안전 R&D	① 안전 관련 신기술·신제품 개발 ② 안전 관련 연구개발(R&D)
⑦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SOC 구축 및 관리	①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 사업 ②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각종 예방·정비 사업
⑧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① 본사 및 사업소 등 안전업무 전담부서 인력의 인건비 ② 기타 안전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
⑨ 기타	① 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운영 ② 화재보험, 안전 관련 회비 등 기타 경비

【개념】

- ◆ 각 기관이 관리중인 시설물의 개량 및 보수·보강, 발주 건설공사, 현업 작업장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

①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대책사업비

-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기능개선, 보수·보강,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사업
- 관리대상 시설물의 경상정비 공사 및 수선유지비 등
- 집단에너지시설 유지관리비,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유지관리비

② 노후 설비 및 장비의 교체·보강, 작업장 환경개선비 등

- 도로 재포장, 터널 보강 등 노후 시설 기능 개선 및 보강

(예시)

도로 포장성능 개선, 구조물 내구수명 연장, 교통안전도 제고, 재해재난 예방 등

- 노후 철도 차량 교체, 제설차량 교체 등
- 작업장 노후 공조설비 등의 교체 및 정비 및 부품구매

③ 청·관사 등 업무시설 유지관리비(시설관리용역 등 외주비 포함)

- 청·관사, 연구동 및 기타 기관 부속시설의 안전시설 개선 및 관리

(예시)

- ▶ 시설물 유지관리비(환경개선비, 보수·보강 등 포함)
- ▶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사업
- ▶ 보안, 경비, 방범, 소독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 비상발전기, CCTV, 보일러, 승강기 등 각종 설비의 보수·교체 비용

【개념】

- ◆ **(안전사업비)** 안전관련 공공기관에서 수행중인 안전 관련 사업비
- ◆ **(안전관리비)** 법령 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각 공공기관 사업 중 대국민 안전 관련 사업비
- ◆ **(안전진단·점검, 검사 등 비용)** 공공기관 보유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진단, 검사,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① 안전사업비

- 안전관리가 기관 설립 목적인 공공기관*의 사업비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해양교통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전기안전공사 등

(예시)

-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로교통 안전진단사업 등
- ▶ (교통안전공단) 교통수단안전점검사업, 철도안전사업 등
- ▶ (산업안전보건공단) 악성 사망사고 집중관리 사업 등

② 안전관리비

-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등

<참고>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 자체가 안전에 관련된 사업인 경우 사업비 전체가 안전 예산이므로 별도 발체가 필요 없음
- 일반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산안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의미

(예시- LH공사)

- ▶ ○○아파트 건설사업, ○○단지 조성 등 기관 고유사업을 위한 발주공사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등

③ 안전진단 · 점검, 안전검사, 각종 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절기별(해빙기, 동절기, 우기) 안전점검
- 취약분야 안전점검 (자체·외부 등)
- 산안법 등 법령에 의한 안전보건진단, 연구실 안전진단
- 건설현장 상시 모니터링 및 위험진단을 위한 점검
- 소방·전기·고압가스시설, 승강기, 보일러 등 시설물 유지·보수 점검·검사
- 석면농도 측정, 공기질 측정, 작업환경측정
- 안전관리 위탁, 보건관리 위탁, 근로자 건강진단·검진, 심리상담 등

【개념】

- ◆ 안전관리(재난·재해예방 포함)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연계운영체제 구축에 필요한 비용
- ◆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및 안전관리 운영체제 구축 등을 위한 비용

① 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 사이버 안전관리시스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수문기상예측정보, 재난관리, 해수유동 관측 등 시스템 구축·운영
- 국가해양관측망 운영, 지진조기경보체제, 지각변동감시체제 등 구축·운영
-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운영,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 보안/검색/경비/출입관리 시스템, 소방방재시스템 구축
- 안전체험관,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통합방재센터 구축·운영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운영
- 다중 상황전파시스템, Safety Call, 위치기반 안전관리시스템 등
-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등

②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운영 및 관련 평가 비용

- 안전경영시스템(KOSHA MS, ISO 45001 등) 인증 관련 비용
- 재난 안전분야 관련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 의료기관, 안전연구실 등 기타 안전 관련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③ 안전관리 운영체제 관련 문서 등 개발 비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지침 등의 사내 내부규정 관련 제·개정
- 안전업무 및 비상대응 매뉴얼, 안전지도, 비상대피도 등의 제작·개선

【개념】

-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의 구입비와 유지보수비 및 점검, 교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① 안전 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 안전 관련 각종 표지 제작 및 소화기 등 구입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구명조끼 등 각종 보호구 구입
- 재난관리 자재 및 구조장비, 각종 안전관련 공기구 및 비품 등 구입

② 안전 관련 장비 등

-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관련 장비 구입 및 검교정
- 소화기, 무전기, 감지기 등 각종 비상기구 구입 및 유지·보수
- 선로보수장비 등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장비, 기구 구입 및 유지·보수
- 사고조사 및 각종 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개념】

- ◆ 임직원 및 하도급 근로자, 발주 건설공사 근로자 등의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① 안전교육 및 훈련비

- 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 국내외 안전위탁교육, e-learning
- 소속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등 안전교육
- 각종 안전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 안전 및 재난 대응훈련, 모의훈련, 비상교육훈련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업무 담당자 워크숍
- 안전 체험관 등 구축·운영
- 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육 콘텐츠, 교재, 물품 등의 제작·구매

② 안전 관련 행사추진 비용 등 홍보성 비용

- 안전점검의 날, 사고예방 캠페인 등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 문화행사
- 안전박람회 참가비, 광고선전비 등 안전 홍보비
- 무재해운동 시상 등 각종 안전 관련 포상
- 안전 관련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등의 제작·구매

【개념】

- ◆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 제작비용 및 재해, 재난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R&D)에 필요한 비용

① 안전 관련 신기술 · 신기술 개발

- 스마트 안전관제기술, 배전작업용 웨어러블 다기능 안전대 개발
- IoT 기술을 활용한 항만 보안 안전문제 개선방안
- 야드 트랙터 줄음 부주의 운전 예방장치 도입
- 사내벤처 재난안전 신제품 개발 등
- 안전 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비용 가능

② 안전 관련 연구개발(R&D)

- 밀폐공간 작업자 위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전력차단기 인적 실수 방지를 위한 관리시스템 개발

※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부 R&D 관련 사업은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

(정부 안전 R&D 관련 예시)

무인 비행체 안전지원 기술개발, 노후도로 내진의사결정 기술개발, 지진 기술개발 사업, 문화재 내진진단 프로세스 구축 연구, 해양단층 특성규명 연구 및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지진조기 경보 시스템 연구, 지진재해 대응 기술 개발, 심부 복합 지구물리 모니터링 평가기술 개발, 지진 진동 측정을 통한 구조물 안전성 평가, 도심지 지하붕괴 인명탐지 및 긴급구호 기술개발, 재난재해 대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건설안전, 예보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 관측기술 지원 및 활용, 해양 기상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황사·연무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연안침식 관리 및 대응기술 실용화 연구, 기후변화 대응 수재해 예방,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개발, 수산 질병제어,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과 위기관리 기반 구축, 사고없는 안전교통, IMO 해양안전 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E-내비게이션), 해양안전기술개발, 안전하고 건강한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국가공공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 정보보호, 원전안전 및 선진화(원전안전,사이버보안), 원자력환경 및 해체 기술개발, 원자력안전,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 기술기반 구축, 방사능 피해예측 및 저감기술, 전기안전기술, 가스안전기술,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술진흥, 규제 선도 기술개발(연안선박용 가스연료 Hybrid 전기추진시스템 안전 및 적용 기술개발), 기후 대기환경 연구,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연구, 재난안심 서비스, 농산물 위해요소 안전관리 기반 및 평가체계 구축, 먹거리안전, 가축질병 예방 기술개발, 먹거리 안전, 가축 질병예방 기술개발, 무인항공기 안전운항 기술개발 및 통합 시범운영 등

【개념】

- ◆ 댐, 하천정비, 항만(방파제), 저수지 등 높임 사업 등과 같이 신규 SOC건설이 주 목적이지만 재해 및 재난예방의 간접효과가 큰 사업

* SOC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만 해당

①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 사업

- 댐 안전성강화 사업,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수도 용수공급체계 안정화
- 국가 및 지방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 항만 안전시설(방파제, 방조제, 호안, 제방, 돌제 등)의 확충, 항로 준설, 해저 장애물 제거 등

②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각종 예방·정비 사업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한발대비용수개발,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등
-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방사업, 녹조발생 대응, 가축위생방역지원 등

(참고)

- 해당 SOC사업의 사업비 전액을 안전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안전관리비만 별도로 발체할 필요 없음)

【개념】

- ◆ 재해·재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연구실안전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인건비
- ◆ 안전순찰 및 경비, 안전점검,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도 해당
 - *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일부만 수행 시 제외**

① 본사 및 사업소 등 안전업무 전담부서 인력의 인건비

-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안전 전담부서 직원
- 산업안전, 시설안전, 재난안전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
- 각 지사, 사업소 등의 안전업무 전담 직원
- 안전·보건·소방관리자 등 법정 선임 인력
- 연구실 안전관리자 등 기타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하는 인력

② 기타 안전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

- 안전 관련 공공기관 인력
- 청소년활동 안전지원, 소방관리, 구조·구급대 등 안전에 밀접한 인력
- 안전패트롤, 안전점검, 시설보수 등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
- 안전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아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 안전관련 업무 수행 비중이 가장 높은 인력 1명을 전담인력으로 구분 가능

(참고)

- 중분류 ①~②간 세부내역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 중복시 업무 비중 등을 고려하여 ① 또는 ② 한쪽으로만 분류
- 안전순찰, 경비, 점검, 시설보수 등을 외주하는 경우 ① 위험시설 정비·보수 예산으로 분류

【개념】

- ◆ 각 기관의 고유업무, 기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한 기타의 비용

① 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경영위원회, 안전근로협의체 등 안전 관련 회의 운영
- 안전 관련 공공기관의 사고 관련 조사위원회 운영
- 안전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안전관련 거버넌스 운영
- 안전 관련 외부 자문 등

② 화재보험, 안전 관련 회비 등 기타 경비

- 화재보험, 상해책임보험 등 4대 보험을 제외한 보험료
- 안전 관련 단체 등의 가입비, 연회비 등

참고 4

안전 인력 및 전문성

□ 안전 인력

【 정 의 】

- ◆ 재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등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 직원
- ◆ 안전순찰, 경비, 안전점검, 시설보수 등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도 해당
- * (주의)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일부만 수행 시 제외,
안전 관련 업무 외주 인력 제외, 청소 인력 제외

① 본사 및 사업소 등 안전업무 전담부서 인력

-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안전 전담부서 직원
- 산업안전, 시설안전, 재난안전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
- 각 지사, 사업소 등의 안전업무 전담 직원
- 안전·보건·소방관리자 등 법정 선임 인력
- 연구실 안전관리자 등 기타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하는 인력

② 기타 안전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인력

- 안전 관련 공공기관 인력
- 청소년활동 안전지원, 소방관리, 구조·구급대 등 안전과 밀접한 인력
- 안전패트롤, 안전점검, 시설보수 등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 인력
- 안전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아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 안전관련 업무 수행 비중이 가장 높은 인력 1명을 전담인력으로 구분 가능

(주의사항)

- 분류 ①~②간 인력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 중복시 업무 비중 등을 고려하여 ① 또는 ② 한쪽으로만 분류
- 안전 관련 기관은 안전 전담부서와 그 외 안전인력을 구분
- 안전관리 대행, 안전순찰, 경비, 점검, 시설보수 등을 외주하는 경우 안전 전담 인력에서 제외

□ 안전 인력의 전문성

(※ 각 전문인력은 서로 중복될 수 없으며, 복수항목에 해당되더라도 택1)

- (안전관련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무분야별 분류 중 안전관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가스기능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 가스기술사,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방재기사,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기술사, 인간공학기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화재감식평가기사·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 의사, 간호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포함

- (안전관련 전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및 별표6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 (안전관련 경력) 안전에 관한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경력기준은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

- (기타 전문가) 안전관련 자격·전공·경력자가 아니더라도 공공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

※ 기타 전문가는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하고, 그 기준 명시

참고 5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 지침 관련 추진과제

※ 관련내용

-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19.3.28.,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2.8.31.개정, 기획재정부)

연번	추진분야	추진과제	비고
1	안전 중심 경영체계 수립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대책 5p, 제6조
2		안전경영책임계획 이사회 승인	대책 5p, 제6조
3		안전관리규정 수립	대책 5p, 제13조
4	작업장·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 자체작업장 및 시설 점검계획 수립	대책 6p, 제14조, 제16조
5		자체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 주무부처 보고	대책 6p, 제14조
6		기관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대책 6p, 제15조
7		안전전문기관 검토 후 위험성평가 결과 주무부처 제출	대책 6p, 제15조
8		도급·발주 작업장 위험성평가 점검 계약조건 포함	대책 6p, 제15조
9		도급발주 작업장 위험성평가 점검 부실시 보완조치 요구	대책 6p, 제15조
10	근로자 안전 위한 조치	위험작업장 및 신입직원 단독작업 제한기준 마련	대책 6p, 제14조
11		폭염 등 이상기후시 작업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	대책 6p, 제14조
12		작업중지 요청제 도입 및 운영	대책 7p, 제17조
13		내부제안제도 도입 및 운영	대책 7p, 제14조
14	안전교육, 홍보, 기술개발 촉진 등	교육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대책 7p, 제9조
15		안전점검의 날 도입 및 운영	대책 7p
16		안전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도입	대책 7p, 제19조
17		안전 공시	대책 12p, 제22조
18		사고기록 및 보존	제24조
19	안전관리 중점기관 추진	안전 전담조직 설치	대책 8p, 제10조
20		안전 전담조직의 기관장(부기관장) 직속 설치	대책 8p, 제10조
21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책 8p, 제11조
22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대책 8p, 제12조
23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대책 8p, 제19조
24		안전목표관리제 도입	대책 8p, 제6조